

가정 내 양육지원서비스의 진단과 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유해미 선임연구원

공적 부문의 대표적인 가정 내 양육지원서비스에 해당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현 정부에서 아동돌봄 분야의 핵심 과제로서 지원체계 전반의 재설계가 예고되어 있다. 이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의 도입 배경과 추진 경과, 이용 추이 등을 토대로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공급 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에 대응해야 하므로 어린이집 등이 운영되지 않는 휴일이나 이른 새벽, 늦은 야간 등에 자녀를 맡길 데가 필요한 맞벌이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아자녀의 양육방식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육아휴직제도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어린이집 대기 중이거나 가정내 양육을 더 선호하는 맞벌이 가구에서 자녀 돌봄의 우려로 인한 경력단절이 야기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은 0~5세 대상 보편적 보육·교육비 지원 등 아동돌봄 정책의 종합적 틀 속에서 실수요자에 주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1. 들어가며

아동돌봄서비스 지원이 어린이집 등 기관 위주로 강화되는 과정에서 가정 기반의 돌봄서비스는 서비스 다양화 측면에서 추진되어왔다. 가정 내 양육지원서비스는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나 기관을 선호하지 않거나, 기관이용에도 불구하고 돌봄의 틈새가 발생하는 가구를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한 공공 부문의 사업으로는 2007년에 도입된 아이돌봄서비스와 2014년에 사업명칭을 시간제보육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

되는 시간제보육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아이돌봄서비스가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07년에 도입되어 2010년에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여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였다. 시간제보육서비스는 2013년 0~5세 무상보육의 실현으로 제기된 기관 미이용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개 사업 모두가 제도 도입 이후로 서비스 접근성 제고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확충은 2023년 부모급여의 도입으로 영아자녀를 가정 내에서 양육하는

가구의 양육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는 지난 정부의 국정과제에 이어 현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명시되어 사업 확장은 물론이고, 지원체계 전반의 재설계가 예고되어 있다¹⁾.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아동돌봄서비스 부문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 강화에 앞서 반드시 짚어야 하는 사항을 다루고, 서비스 공급 방향을 논의하였다. 그 밖에도 가정내 양육가구의 고립 육아 해소를 위한 추가 과제를 언급하였다.

2.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현황과 이용 추이

효과성 제고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주요 연혁과 서비스 유형별 이용 추이를 우선적으로 살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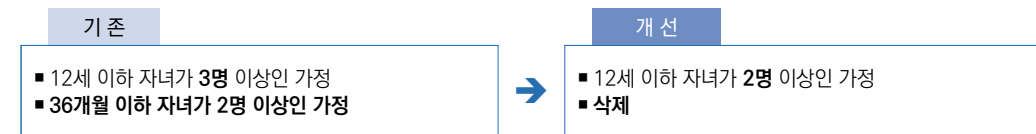
가. 주요 경과 및 지원 현황

아이돌봄서비스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지원된다. 우선 부모의 출장, 야간, 아동 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양육 공백에 탄력적으로 대응

하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 또한 1:1 개별보육을 선호하는 취업부모에게 가정 기반의 대리양육 서비스를 제공한다²⁾. 이처럼 아이돌봄서비스는 기관 중심의 비용지원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돌봄 사각지대에 대응하고, 영아자녀의 양육방식에 대한 부모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1) 주요 연혁

아이돌봄서비스는 2007년 신규 사업으로 도입되어 2009년에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대하였으며, 2012년 「아이돌봄 지원법」 제정으로 지원대상을 기존의 영유아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서 모든 취업부모로 확대하기에 이르렀다³⁾.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2010년에 신규로 도입되어 지원연령을 당초 만 12개월에서 2014년 만 24개월 이하, 2017년 만 36개월 이하로 점차 확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연간 정부지원 시간은 2019년에는 720시간, 2020년에는 960시간으로 거듭 늘렸다. 정부지원 대상은 2013년에 시간제돌봄 지원 예산이 확대됨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근거를 신설하여 취약계층 자녀 등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24년부터는 두 자녀 이상 가구에게



자료: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5. 3. 31). 이제 두 자녀 가정도 아이돌봄서비스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됩니다.

[그림 1]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변경 사항(2025)

1)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집.

2) 여성가족부(2025). 2025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p. 15.

3) 여성가족부(2025). 2025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pp. 16~17.

자부담의 10%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데⁴⁾, 2025년에는 다자녀가구 기준을 당초 12세 이하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서 '12세 이하 2명 이상인 경우'로 완화하였다.

한편 정부지원 확대에 맞추어 지원 대상 소득 기준과 지원 비율은 점차 상향 조정되어왔다. 특히 2025년에는 정부지원 대상을 기존의 중위 소득 150%에서 200%까지 확대하고, 영아돌봄의 경우는 시간당 1,5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원활한 서비스 공급을 꾀하고 있다. 또한 2025년 4월 2일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으로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인력 자격과 서비스 전달체계 측면에서도 커다란 전환을 맞고 있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를 신설하고,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등록기관에서 활동하는 돌봄인력에 대해서는 범죄경력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앞서 2023년부터 기존에 시·군·구 마다 1개씩 운영하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기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제도 변화를 종합해보면, 아이돌봄서비스는 제도 간 정합성을 위해 보편적

비용지원이 이루어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관(어린이집 등)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돋보인다. 이와 동시에 기관을 선호하지 않는 영아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가 가정 내 양육지원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된 역할임을 알 수 있다.

2) 지원대상 및 내용

앞서 다룬 바와 같이 2025년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이 큰 폭으로 확대되어 기존에 전액 부모 자부담으로 이용하던 중위소득 150~200%에 해당하는 '라'형 가구의 경우도 0~5세아는 15%, 6세~12세는 1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체계는 어린이집의 보육료와 유치원의 유아학비 지원과는 달리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으로 자부담 비용을 달리 적용하여 양육비 부담 완화의 효과를 담보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표 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2025)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 취학전		취학후		다자녀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10,354원(85%)	1,826원(15%)	9,136원(75%)	3,044원(25%)	본인 부담금의 10% 할인
나형	120% 이하	7,308원(60%)	4,872원(40%)	4,872원(40%)	7,308원(60%)	
다형	150% 이하	3,654원(30%)	8,526원(70%)	2,436원(20%)	9,744원(80%)	
라형	200% 이하	1,828원(15%)	10,352원(85%)	1,218원(10%)	10,962원(90%)	
마형	200% 초과	-	12,180원(100%)	-	12,180원(100%)	-

자료: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5. 3. 31). 이제 두 자녀 가정도 아이돌봄서비스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됩니다. p.3.

4)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5. 3. 31). 이제 두 자녀 가정도 아이돌봄서비스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됩니다. p.3.

〈표 2〉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 이용자 추이(2017~2024)

단위: 가구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시간제 이용	58,489	60,053	66,783	56,525	57,454	61,138	66,515	70,021
종일제 이용	5,057	4,538	3,702	3,138	2,617	2,760	1,890	1,155
기타	-	-	-	-	11,718	14,314	17,695	46,950
전체	63,546	64,591	70,485	59,663	71,789	78,212	86,100	118,126

자료: 1) 2017년~2023년 자료: 육아정책연구소(2024). 2023 영유아 주요통계. p.43.

2) 2024년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idolbom.go.kr>(인출일: 2025. 4. 21)

나. 서비스 이용 및 공급 추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는 2024년에 118,126 가구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런데 이때 두드러진 변화는 영아종일제 이용가구가 수 가 급격하게 감소한 점이다. 2024년 기준으로 시간제돌봄 이용가구가 70,021가구로 증가한 반면, 영아종일제 이용가구는 1,155명으로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다. 2012년부터 영아 무상보육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이어가던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가 2023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 점은 수요 변화의 측면에서 그 원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2023년에 도입된 부모급여 및 2024년에 100만원으로 확대된 부모급여 상향 조정, 육아휴직제도 강화 등 유관 정책의 변화가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에 미친 영향을 면밀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부모급여 도입으로 영아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서비스 지출 비용을 줄이기 위한 선택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다수의 취업모가 육아휴직을 이용하기 힘든 상황에 출산 후 직장 복직하기 위해서는 집 근처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필요하지만 영아반 위주의 가정어린이집 폐원이 가속화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리양육이 필요한 맞벌이 가구에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유일한 선택지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2024년 기준으로 28,663명이 활동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년에 도입되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아이돌보미 양성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야 하는 상황이다. 즉,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도입으로 인력 양성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점이다. 원활한 인력 양성은 일자리 질에 좌우되므로 국가자격제 도입에 따른 전문성 제고에 부합하는 치우개선이 요구된다.

〈표 3〉 아이돌보미 현황(2017~2024)

단위: 명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아이돌보미 수	20,878	23,675	24,677	24,469	25,917	26,675	28,071	28,663

자료: 1) 2017년~2023년 자료: 육아정책연구소(2024). 2023 영유아 주요통계. p.44.

2) 2024년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idolbom.go.kr>(인출일: 2025. 4. 21)

3. 주요 이슈 및 쟁점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집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방안으로 제시된 사항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제기하면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및 비용부담 완화, 아이돌보미 일자리 질 개선, 민간 육아도우미 관리⁵⁾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첫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과 비용부담의 완화에 관한 사항이다.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된다. 이러한 비용지원체계는 소득수준에 따라 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므로 이를 반영하여 양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은 자부담 수준에 차이를 둬으로써 실제로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가구에서 이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가(假)수요를 예방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실수요와 상관없는 보편적 지원은 가(假)수요를 유발하여 실수요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대표적으로 2012년부터 육구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영아에게 보육료를 일괄 지원하여 결과적으로는 맞벌이 가구에서 종일제보육 수요를 충족하기 힘든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앞서 지원 목적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아이돌봄서비스는 보편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자부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필요한 가구에서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규모에 대해서는 실요자를 중심으로 면밀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장시간 보육을 기피하거나 사교육을 위한 이른 하원에 따

른 돌봄 공백에 대응하려는 대기자는 정부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 소득수준이 높은 실수요자의 경우에도 서비스가 필요한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이용비용이 부담되므로 자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둘째, 아이돌보미 처우개선과 안정적 일자리의 보장은 국가자격제에 부합하는 후속 조치라고 여겨진다. 이때 급여수준 개선은 안정적 인력 공급의 일차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아이돌보미 최소 근로시간의 보장은 안정적 일자리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된다. 단, 이를 위해서는 아이돌보미의 주당 활동 시간 및 분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공급의 매칭의 어려움으로 대기가 지속되고 있으나, 아이돌보미 주당 근로시간의 개별 격차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이돌보미 근로시간 보장 문제는 긴급돌봄의 접근성과 기관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대의 접근성 제고 방안과의 연계, 그리고 아이돌보미가 임의로 활동을 중단하거나 서비스제공기관에 의한 서비스 연계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장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간 육아도우미 관리를 위해 민간 서비스 기관의 관리 및 감독하는 제도에 관한 사항이다. 그간 공공 부문의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에도 불구하고,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이 지속되어 민간 부문의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지난 4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으로 내년 상반기에 등록 민간 서비스 기관의 인력에 대해서는 범죄이력 조사가 가능하여 신원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업체별로 인력 공급 및 관리 방식이 매우 다양하고, 아이돌봄 이외 서비스를 다양화 하는 추세이므로 등록업체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5)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5. 4. 2).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민간 서비스기관 등록제 도입된다.

현장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수요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으므로 정부 개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감안하면 대기가 길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맞벌이 가구에 등록 민간 서비스 기관의 정보를 제공하여 공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업체 육아도우미의 재교육을 공공 부문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만하다.

4. 정책 제언

아이돌봄서비스는 지원 목적에 부합해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아이돌봄서비스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지원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점은 반드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지원 목적을 거듭하여 언급하는 것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앞서 아이돌봄서비스의 고유한 역할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공급 확대는 다음을 견지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시설보육 및 돌봄의 사각지대에 주목해야 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2013년 0~5세 무상보육 실현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돌봄을 충족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근로형태와 근로시간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해왔다. 어린이집 연장보육과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및 아침돌봄과 저녁돌봄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 그리고 초등학교 방과후에 자녀를 맡길 데가 필요한 가구, 이를테면 이른 새벽이나 야간근로 가구, 장시간근로 가구, 주말이나 휴일근로 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가 1:1 개별돌봄 방식으로 기관에 비해 이용료가 비싸고, 보편적 서비스가 아

니라는 점은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정부의 지원 수준을 높여서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는 현재의 지원방식이 타당함을 말해준다.

다음으로 영아자녀 부모의 선택권에 주목해야 한다. 영아자녀의 양육방식에 대한 부모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가구는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 입소 대기 중인 맞벌이 가구, 육아휴직이 힘들거나 원하지 않아서 대리양육이 필요하나 기관보다는 가정내 양육을 더 선호하는 맞벌이 가구가 그들이다. 이들을 위해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때 부모급여가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와 통합적으로 설계되어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구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돌봄서비스 지출비용을 줄이고자 단시간 근로로 변경하거나 경력단절을 선택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상에서 살펴본 아이돌봄서비스 이외에도 가정내 양육지원을 위해서는 고립된 육아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부모급여 도입으로 0~1세 자녀를 둔 가구의 고립된 육아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일시보육을 위한 시간제보육서비스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접근성 제고 및 지리적 격차 해소 방안이 요구된다.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는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그 추진 동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지 않도록 점검이 필요하다.